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
- 회부일자 : 2019년 8월 22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8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조례 개정 건의, 교육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종합 검토함으로써 유사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신청 시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4조)
-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현 조직에 맞게 자구 수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 사업계획서 신청에 있어 현행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던 것

을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교육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교육장이 조정역할을 통해 유사사업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평생학습 담당”을 “교육경비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른 신청서를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해야 한다.</u></p> <p><u>② 교육장은 초·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u></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p> <p>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④ (생략)</p> <p>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p>	<p><u>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시설관리과장</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교육</u></p>

학습담당이 된다.

경비업무 담당-----

-----.